

소득확인증명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발급번호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

소득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(단위 : 원)

[] 근로소득자용

(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,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「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」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)

귀속 연도	소득구분	원천징수의무자		총급여(과세대상급여)액
		법인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	

[]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

(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「근로소득자용」의 총급여액으로 판단)

귀속 연도	종합(결정)소득금액	근로소득 유·무	사업소득 유·무	근로·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·무
		[]유 []무	[]유 []무	[]유 []무

[]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

(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,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「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」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)

귀속 연도	원천징수의무자		사업소득금액 (해당연도소득금액)
	법인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2조의13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재형저축 소득요건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4제1항제1호)을 ([] 충족, [] 미충족)·서민형 재형저축 소득요건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4제3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)을 ([] 충족, [] 미충족) 함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

직인

유의사항

- ※ 근로소득(연말정산한 사업소득)만 있는 근로소득자(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) 또는 근로소득(연말정산한 사업소득)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「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」과 「근로소득자용(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)」을 모두 기재합니다.
- ※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(과세대상급여)액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,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(과세소득)을 기재합니다.
- ※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의 종합소득금액(결정소득금액)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※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,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※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전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·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·결정,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·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,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되 통보일까지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